

## ■ Legal Update ■

## 미얀마 정부 개정 연방조세법 공포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팀

미얀마 정부는 2014년 3월 28일 개정 연방조세법(Union Tax and Duty Law)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연방조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업세

## (1) 재화 판매 시 부과되는 상업세율 변경

개정 연방조세법에 따라 미얀마 티크 재목의 경우 50%에서 25%로, 가공된 루비 등 기타 보석류의 경우 30%에서 15%로 상업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법 제11조 제b항). 위 사항 이외에도 2012-2013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상업세 적용 항목 및 세율이 일부 변동되었으므로, 생산 및 수입하는 재화에 따라 상업세 적용대상인지와 그 적용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용역 제공에 따른 상업세 부과방식 변경

용역 제공에 따른 상업세와 관련하여, 2012-2013년 회계연도의 경우 상업세법 및 재무부 Notification 117/2012에서 정한 유형의 용역에 대해서만 매출 또는 수령액의 5%가 상업세로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개정 연방조세법은 상업세가 면제되는 업종을 임대업, 보험업 등 26개 용역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매출 또는 수령액의 5%의 상업세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f항). 따라서 향후에는 명시적인 면제 업종 외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소득세법

(1) 세율

미얀마의 경우 소득세율을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법의 수권에 따른 별도의 하위 규정을 두어 공포하는데, 대부분 재무부 Notification에서 소득세율을 규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2-2013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재무부 Notification 제107/2012호에 따라 매년 소득이 1,440,000 짜트(120,000 짜트/월)이상인 미얀마인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해 1~2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방조세법 개정시 위 Notification에 규정되어 있던 개인소득세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율을 변경하였습니다(법 제22조).

	과세표준(공제 후)		세율
	From (Kyats)	To (Kyats)	
1	1	2,000,000	0 %
2	2,000,001	5,000,000	5 %
3	5,000,001	10,000,000	10 %
4	10,000,001	20,000,000	15 %
5	20,000,001	30,000,000	20 %
6	30,000,001 이상		25 %

(2) 공제액

연방조세법 개정에 따라 재무부 Notification 제 110/2012호에 규정되어 있던 공제유형 및 공제액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법 제33조, 제34조). 개정 연방조세법상 기본공제율은 위 Notification과 동일하나, 배우자 및 자녀공제액은 증가하였습니다.

공제 유형	변경 전 공제액(Kyats)	변경 후 공제액(Kyats)
기본공제	각 소득유형당 20% 단, 총 공제액은 10,000,000 Kyats를 초과하지 않음	
배우자 공제	300,000	500,000
자녀 공제	1인당 200,000	1인당 300,000

(3) 미신고소득 신고의무 부과

개정 연방조세법은 개인의 미신고소득(unassessed income)이 적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간 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법 제26조). 이러한 개정은 실질과세 원칙 하에 미신고소득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미얀마 정부의 과세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Kyats)		세율
1	1	500,00,000	3 %
2	500,00,001	1500,00,000	10%
3	1500,00,001	3000,00,000	20%
4	3000,00,001 이상		30%